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법인 아리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가온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가온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라 칭하고 가온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 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 (50%), 교원위원 4명(40%), 지역위원 1명(10%)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자 순위로 2배수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를 구성·운영한다.
- ⑥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 된다
- ⑦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명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 ⑧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⑨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직위원과 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

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때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를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자문

제11조 (기능)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회부한다.)

제12조 (자문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졸업앨범, 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②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운영

제13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 ②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 정족수)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삭제

제19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内外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3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 6 장 법인 개방 임원 추천

제25조(개방형임원 추천) 사립학교법 제14조,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형 임원을 추천한다.

제26조(추천절차 및 인원) ① 개방형 임원의 대상은 이사 및 감사로 법인의 추천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심의하여 추천한다.

② 개방형 이사는 법인의 이사 결원발생 2배수를 추천하며, 감사는 1인을 추천한다.

제27조(임원 결격사유) 법인 개방임원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해당자

②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4급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